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51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시정 핵심과제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1일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안 제6905호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2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1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7. 29.~8. 2.)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90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2항”으로, “2021년 10월 31일”을 “2022년 10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칙 <제6905호, 2018. 10. 4.></p> <p>제1조(시행일) (생략)</p> <p>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u>제21조제3항</u>의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은 <u>2021년 10월 31일</u>까지로 한다.</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p>	<p>부칙 <제6905호, 2018. 10. 4.></p> <p>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p> <p>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u>제21조제2항</u>----- ----- <u>2022년 10월 31일</u>----- -----.</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기존 행정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추가 인건비 순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유 진(02-2133-6729)